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‘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’에서 ‘페트(PET, polyethyleneterephthalate)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(안 제32조 및 제33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-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

제3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: 플라스틱 중 페트(PET, polyethylene terephthalate)를 사용하여 연간 5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(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2조(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 종) 법 제23조제1항에서 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다 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		제32조(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 종) ----- ----- -----.		
1. ~ 3. (생 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<u>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 틱 물질 제조업</u>		4. <u>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 올 음료 제조업</u>		
제33조(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 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 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33조(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 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) - ----- -----.		
1.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 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 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, 재 활용시설 현황,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	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가. ~ 다. (생 략)	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라. <u>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 스틱 물질 제조업: 플라스</u>		라. <u>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 코올 음료 제조업: 플라스</u>		

<u>틱 중 페트(PET, polyethylene terephthalate)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</u> 2. ~ 4. (생략)	<u>틱 중 페트(PET, polyethylene terephthalate)를 사용하여 연간 5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(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)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81